

◎ 환경부고시제2001-164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물)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당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물)의 배출허용기준은 25mg/l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1-165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방류수수질기준

1. 항목 :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2. 방류수수질기준 : 1mg/l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다.

◎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과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0 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의 사전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오수농도}(C) = \frac{\{ Q_1 C_1 + Q_2 C_2 + \dots \}}{Q_1 + Q_2 + \dots}$$

Q1: 용도1의 오수발생량,

C1: 용도1의 오수농도,

Q2: 용도2의 오수발생량,

C2: 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5)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99.8.9.) 및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99.8.9.)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은 연합회(02.852.2291)로 문의

#### ◎ 환경부고시제2001-180호 ◎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소음기계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 1996-110호, 1996. 9. 6.)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 고소음기계중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개정

제6조제1항중 “신청서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다.(단, 착암기와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를 “신청서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 착암기, 브레이커 및 콘크리트 절단기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나 목 중 “1톤”을 “2톤”으로 하고, 동호에 자 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로울러(roller)

도로바닥의 토사 및 쇄석 등에 전압 또는 진동을 작용

시켜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서 조종식과 전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과 피견인 진동식인 것

#### 차. 콘크리트펌프(concretepump)

콘크리트 배출 압송능력이 시간당 5m<sup>3</sup> 이상으로 원동기 를 갖춘 이동식과 트레일러식 건설기계

#### 카. 콘크리트 절단기(concrete cutter)

소형타이어가 부착된 차대위에 황형컷터를 회전시키는 엔진을 장착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노면 등을 절단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별표 2] 제3호 사목(3) 중 “불도우저”로, “브레이드”를 “블레이드(blade)”로, “바켓(bucket)”으로, “그램쉘”을 “크램쉘(clamshell)”로 하고, 동목에 (4) 내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로울러

밸러스트(ballast)를 장착할 수 있는 기계는 최대량을 적재한 상태로 한다.

#### (5) 콘크리트펌프

최대능력의 운전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압송한다. 이 때 봄(boom)식은 봄을 수평방향으로 늘리고 배관식은 10m정 도의 수평배관으로 한다.

#### (6) 콘크리트 절단기

다음과 같은 크기의

환형 플래이트

(plate)를 장착하

고, 정격회전으로 절

삭하는데 이 때의 컷터 깊이는 플레이트 지름의 1/4로 한

다. 절단하는 콘크리트판은 지표면에 고정한다.

정력출력(PS)	플레이트 크기(mm)
15≤PS<20	306
20≤PS<40	356
40≤PS	508

[별표 2] 제5호 가목 (1)의 제목 “굴삭기 · 로우더 · 공기 압축기 · 발전기 · 압쇄기”를 “굴삭기 · 로우더 · 공기압축기 · 발전기 · 압쇄기 · 로울러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절단기”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착암기 · 브레이커

10초이상 측정한 등가소음도(Leq)로 한다.

#### (3) 항타기

30초 이내에서 측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개 이상의 충격소음피크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발생시마다 피크 치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고시제2001-184호 ◎

[별표 1]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범위

종 류	용 량	권고소음도(dB(A))	출 력 조 건
굴삭기	출력 75마력미만 75이상 140미만	73 이하 76 이하	무부하, 최고회전수

종 류	용 량	권고소음도(dB(A))	출 력 조 건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로우더	140이상 280미만	79 이하		사업장폐기물감량 화지침
	280이상	82 이하		
	출력 75마력미만	76 이하	무부하, 최고회전수	
	75이상 140미만	79 이하		
공기압축기	140마력이상	82 이하		제1조(목적) 이 지 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동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 기물의 감량지침준 수의무대상사업자 가 폐기물감량화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량 10m <sup>3</sup> /분미 만	74 이하	경적부하, 정격회전수	
	10이상 30미만	76 이하 78 이하		
발전기	30m <sup>3</sup> /분 이상	74 이하	무부하, 정격회전수(60Hz)	제2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출력 75마력미만	76 이하		
착암기	75마력이상	85 이하	작업시(콘크리트괴)	
브레이커	전체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전체(본체및브라)			
	중량	85 이하	작업시(콘크리트판)	
압쇄기	500kg미만	88 이하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500kg이상	73 이하	하이아이들(베이스머신)	
	출력 75마력미만	76 이하		
향타기	75이상 140미만	79 이하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140이상 280미만	82 이하		
	280마력이상	85 이하	작업시(벤치테스트)	
도울러	전체	76 이하	하이아이들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출력 75마력미만	79 이하		
콘크리트펌프	75마력이상	84 이하	작업시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전체	88 이하	작업시(콘크리트판)	
콘크리트절단기	15마력이상			1. “폐기물감량화” 라 함은 다음 각목 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폐기물발 생 및 처리량을 줄 이거나 유해성 등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출력 15마력이상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도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2일

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운영, 환경  
친화적 대체원료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  
한다.

나.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화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전산프로그램”이라 함은 사업자의 감량계획 및 추진 실적을 전사처리하고,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기술 교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가 개발하여 인터넷(www.wms-net.or.kr)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기구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감량계획 수립 등) ①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자원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6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05호)에 의하여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수립하는 재활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감량계획에 갈음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연도 감량목표
3.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4. 기타 폐기물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 인력현황등 감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량실적등 제출) ①사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감량실적등”이라 한다.)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실적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실적등 평가보고)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등을 전산처리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폐기물감량화 평가보고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감량화 추진실적종합(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목표설정 및 달성정도 분석 등)
2. 폐기물감량화 우수사례
3. 사업장폐기물감량우수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지정요청대상 사업장 현황
4. 폐기물감량화 추진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대책
5. 기타 전의사항 등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실적 등 및 평가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장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이 최근 3년간 폐기

물관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하여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하여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인 경우 이를 우수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장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사업장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한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정제도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8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와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및 다음 1년간의 세부이행계획 등 보고사항중 폐기물관리분야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으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요청한 사업장의 감량우수사례를 당해 사업자의 동의하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에 이를 게시하는 등 폐기물감량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감량실적등 평가,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등을 위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은 폐기물 감량화기술 또는 관리경험이 있는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기술진단·지도)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폐기물감량화에 대한 기술진단·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실적평가단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량계획의 수립·제출, 감량실적 등 평가보고 및 우수사업장의 지정등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 ◎ 환경부공고 제2001 - 139호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 · 도지사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분산 · 위임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일괄 위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1. 개정이유

시 · 도지사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분산 · 위임되어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일괄 위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가. 환경관리청장 ·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 신고 및 지도 · 점검 등의 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48조제1항).  
나. 시 · 도지사 고유사무와 환경관리청장 · 지방환경관리청장 위임사무로 분리되어 있는 저황유 · 청정연료 등의 의무사용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중 현재 환경관리청장 ·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역의 관리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48조제2항)

## 2. 주요골자

환경관리청장 ·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장, 수출자유지역안의 사업장 및 일부 공업지역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 신고 및 지도 ·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제11호, 제51조제2항)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504-9234, FAX : 02- 503-9876), 전자우편 : kimd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부공고 제2001 - 141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기타 문의 전화: 02-504-9234, FAX : 02- 503-9876  
전자우편 : kimdm@me.go.kr

2001년 12월 1일

환경부장관

## ◎ 환경부공고 제2001 - 140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시 · 도지사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분산 · 위임되어 있는 유독물질등록 등의 관리업무 및 화

학물질 유통량·배출량조사 업무 중 유독물영업등록 등의 관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일괄 위임하고,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조사 등 전문적 조사업무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일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역의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대한 등록·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25조제1항).

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조사업무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5조제2항).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504-9234, FAX : 02-503-9876), 전자우편 : kimd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시판

# 2002년도 환경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정

## 기술사

회별	시험종목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면접)시험 실비납부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제66회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1월28일~1월30일	2월24일	4월8일	4월8일~4월11일	5월5일~5월11일	5월27일
제68회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8월5일~8월7일	8월25일	10월14일	10월14일~10월17일	11월3일~11월9일	11월25일

## 기사, 산업기사

회별	시험종목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실기(면접)시험 실비납부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제1회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월18일~2월20일	3월10일	3월25일	3월25일~3월28일	4월21일~5월4일	6월3일
제2회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5월6일~5월9일	5월26일	6월10일	6월10일~6월14일	7월7일~7월20일	8월19일
제3회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7월22일~7월24일	8월11일	8월26일	8월26일~8월29일	9월29일~10월12일	11월11일
제4회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8월19일~8월21일	9월8일	9월23일	9월23일~9월26일	10월27일~11월9일	12월9일